이 문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무단 유출을 금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3., 2014.11.20., 2019.6.5.)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특정공법 기술심의(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설치공사, 상부거더공)

- 세부항목 : 의안1. 2구간 교량 상부거더 공법 선정 취소 처리

  · (원안) 지난 기술심의('24. 2.27.)에서 소음저감시설 2단계 2구간 상부거더 공법으로 선정된 "LIT공법"을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의안1	○				

○ **사 유 :** 선정위원회 토기이사 또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성 명 : 김정석 (서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가철도공단 / 심의평가 / 10002728 / 전민수 /2026-11-13 13:02:15

이 문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무단 유출을 금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3., 2014.11.20., 2019.6.5.)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특정공법 기술심의(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설치공사, 상부거더공)

- 세부항목 : 의안1. 2구간 교량 상부거더 공법 선정 취소 처리

  · (원안) 지난 기술심의('24. 2.27.)에서 소음저감시설 2단계 2구간 상부거더 공법으로 선정된 "LIT공법"을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의안1	○				

○ **사 유 :** 사업부서 의견이 타당함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성 명 : 오 영심 (서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가철도공단 / 심의평가 / 10002728 / 전민수 /2026-11-13 13:02:15

이 문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무단 유출을 금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3., 2014.11.20., 2019.6.5.)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특정공법 기술심의(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설치공사, 상부거더공)

- 세부항목 : 의안1. 2구간 교량 상부거더 공법 선정 취소 처리

· (원안) 지난 기술심의('24. 2.27.)에서 소음저감시설 2단계 2구간 상부거더 공법으로 선정된 "LIT공법"을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의안1	○				

○ 사 유 : 도로계획과의 협의 완료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성 명 : 신석호 (서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가철도공단 / 심의평가 / 10002728 / 전민수 /2026-11-13 13:02:15

이 문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무단 유출을 금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3., 2014.11.20., 2019.6.5.)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특정공법 기술심의(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설치공사, 상부거더공)

- 세부항목 : 의안1. 2구간 교량 상부거더 공법 선정 취소 처리

· (원안) 지난 기술심의('24. 2.27.)에서 소음저감시설 2단계 2구간 상부거더 공법으로 선정된 "LIT공법"을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의안1	○				

○ 사 유 : 적정하다고 판단됨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성 명 : 김시욱 (서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가철도공단 / 심의평가 / 10002728 / 전민수 /2026-11-13 13:02:15

이 문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무단 유출을 금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3., 2014.11.20., 2019.6.5.)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특정공법 기술심의(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설치공사, 상부거더공)

- 세부항목 : 의안1. 2구간 교량 상부거더 공법 선정 취소 처리

  · (원안) 지난 기술심의('24. 2.27.)에서 소음저감시설 2단계 2구간 상부거더 공법으로 선정된 "LIT공법"을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의안1	○				

○ **사 유 :** 원안 타당함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성 명 : 김 방원 (서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가철도공단 / 심의평가 / 10002728 / 전민수 /2026-11-13 13:02:15

이 문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무단 유출을 금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3., 2014.11.20., 2019.6.5.)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특정공법 기술심의(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설치공사, 상부거더공)

- 세부항목 : 의안1. 2구간 교량 상부거더 공법 선정 취소 처리

· (원안) 지난 기술심의('24. 2.27.)에서 소음저감시설 2단계 2구간 상부거더 공법으로 선정된 "LIT공법"을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의안1	○				

○ **사 유 :** 귀책 사유가 분당 경찰서의 차량 전면통행 불가 통보에서 시작되었고 (주)리튼브릿지가 스스로 시공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공법 선정 취소 처리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성 명 : 윤영철 (서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가철도공단 / 심의평가 / 10002728 / 전민수 /2026-11-13 13:02:15

이 문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무단 유출을 금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3., 2014.11.20., 2019.6.5.)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특정공법 기술심의(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설치공사, 상부거더공)

- 세부항목 : 의안1. 2구간 교량 상부거더 공법 선정 취소 처리

· (원안) 지난 기술심의('24. 2.27.)에서 소음저감시설 2단계 2구간 상부거더 공법으로 선정된 "LIT공법"을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의안1	○				

○ 사 유 : LIT 공법은 전면고등 통제가 불가피하므로 선정취소는 적정함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성 명 : 김병환 (서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가철도공단 / 심의평가 / 10002728 / 전민수 /2026-11-13 13:02:15

이 문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무단 유출을 금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3., 2014.11.20., 2019.6.5.)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특정공법 기술심의(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설치공사, 상부거더공)

- 세부항목 : 의안2. 공법 선정 취소 시, 후속 처리방안
  - (원안) 타 사업 사례, 공정계획,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수립한 방안(2구간 차순위 업체 선정) 추진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의안2	○				

○ 사 유 : 차순위 업체 및 기 선정된 공법과 안전성 확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이.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성 명 : (서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가철도공단 / 심의평가 / 10002728 / 전민수 /2026-11-13 13:02:15

이 문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무단 유출을 금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3., 2014.11.20., 2019.6.5.)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특정공법 기술심의(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설치공사, 상부거더공)

- 세부항목 : 의안2. 공법 선정 취소 시, 후속 처리방안
  - · (원안) 타 사업 사례, 공정계획,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수립한 방안(2구간 차순위 업체 선정) 추진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의안2	○				

○ **사 유 :**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서는 사업부서 의견이 타당함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성 명 : 오 영섭 (서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가철도공단 / 심의평가 / 10002728 / 전민수 /2026-11-13 13:02:15

이 문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무단 유출을 금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3., 2014.11.20., 2019.6.5.)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특정공법 기술심의(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설치공사, 상부거더공)

- 세부항목 : 의안2. 공법 선정 취소 시, 후속 처리방안
  - · (원안) 타 사업 사례, 공정계획,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수립한 방안(2구간 차순위 업체 선정) 추진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의안2	○				

○ 사 유 : 부결하고 기술적 차원의 협의사항을 재검토함.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성 명 : 신석근 (서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가철도공단 / 심의평가 / 10002728 / 전민수 /2026-11-13 13:02:15

이 문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무단 유출을 금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3., 2014.11.20., 2019.6.5.)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특정공법 기술심의(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설치공사, 상부거더공)

- 세부항목 : 의안2. 공법 선정 취소 시, 후속 처리방안

  · (원안) 타 사업 사례, 공정계획,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수립한 방안(2구간 차순위 업체 선정) 추진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의안2	○				

○ 사 유 : 적정하다고 판단됨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성 명 : 김시중 (서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가철도공단 / 심의평가 / 10002728 / 전민수 /2026-11-13 13:02:15

이 문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무단 유출을 금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3., 2014.11.20., 2019.6.5.)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특정공법 기술심의(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설치공사, 상부거더공)

- 세부항목 : 의안2. 공법 선정 취소 시, 후속 처리방안

  · (원안) 타 사업 사례, 공정계획,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수립한 방안(2구간 차순위 업체 선정) 추진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의안2	○				

○ **사 유 :** 원안 타당함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성 명 : 김방원 (서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가철도공단 / 심의평가 / 10002728 / 전민수 /2026-11-13 13:02:15

이 문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무단 유출을 금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3., 2014.11.20., 2019.6.5.)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특정공법 기술심의(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설치공사, 상부거더공)

- 세부항목 : 의안2. 공법 선정 취소 시, 후속 처리방안
  - (원안) 타 사업 사례, 공정계획,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수립한 방안(2구간 차순위 업체 선정) 추진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의안2	○				

○ **사 유 :**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1순위 업체 선정 취소시 2순위 업체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정 계획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차순위 업체와의 협의가 충분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순위 업체의 민원 방지에 대한 확인 및 방안 고려 필요)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성 명 : 윤영철 (서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가철도공단 / 심의평가 / 10002728 / 전민수 /2026-11-13 13:02:15

이 문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로 무단 유출을 금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3., 2014.11.20., 2019.6.5.)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특정공법 기술심의(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설치공사, 상부거더공)**

- 세부항목 : 의안2. 공법 선정 취소 시, 후속 처리방안

  · (원안) 타 사업 사례, 공정계획,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수립한 방안(2구간 차순위 업체 선정) 추진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의안2	○				

○ **사 유 :** 교통 정체 등제가 없는 긴급히 공법의 선정은 적정함.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성 명 : 김병화 (서명)

국가철도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가철도공단 / 심의평가 / 10002728 / 전민수 /2026-11-13 13:02:15